

#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## 주 의 요 구

제 목 축산물 업소 위생검사 미실시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

내 용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(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)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.

다만 위 연 1회 이상 위생검사 대상 업체 중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이하 ‘식약처장’이라 한다)이 인증한 안전관리인증작업장(HACCP적용 업체)은 인증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·검사를 완화하도록 해썹(HACCP) 적용업체 우대조치<sup>1)</sup>를 하고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식약처장이 인증한 해썹(HACCP) 적용업체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 대해

---

1)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·평가하고,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나온 경우에는 「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」에 따라 해썹(HACCP) 적용업체 우대(IX.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·감독, 2.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제도운영, 8. 기타 참고사항)

서는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였다.

그런데 아래 [표]와 같이 광주광역시 및 서구 등 4개 구에서 2015년~2016년 9월까지 사이에 허가한 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체 113개소(2015년 63개소, 2016년 9월까지 50개소) 중 해썹(HACCP)적용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30개 업체를 제외한 83개 업체에 대한 위생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,

광주광역시 서구 등 4개구에서는 위생검사 대상인 83개 업체 중 14개 업소만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69개 업체에 대하여는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 업무 병행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[표] 연 1회 이상 위생검사 미실시 내역

<단위 : 개소>

허가연도	허가업소수 (㉠)	인증관리작업장(HACCP)㉡	위생검사대상 (㉠-㉡)	위생검사 실시업소	위생검사 미실시 업소
계	113	30	83	14	69
2015	63	16	47	4	43
2016. 9.	50	14	36	10	26

**조치할 사항**           **광주광역시 서구청장, 남구청장, 북구청장, 광산구청장은**

**[주의]**   앞으로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한 위생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